

2022년 제1회 건축소위원회(건축구조) 심의 주요결과

[1호 안건: 서구 청라동 94-1(업무시설(오피스텔), 판매시설)]

운영기관	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		심의일자	2022.1.21.	
건축종별	[○] 신축, [] 증축, [] 대수선, [] 기타				
건축주	성명(법인명) 청라국제금융단지(주)				
대지현황	대지위치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동				
	지 번	94-1	관련지번		
	대지면적	11,336.10㎡	용도지역(지구,구역) 중심상업지역		
건축물현황	건축면적	6,742.468㎡	건폐율	59.48%	층수 지하 : -4층 / 지상 : 47층
	주 용 도	업무시설(오피스텔) 판매시설	구 조	철근콘크리트구조 철골구조 철골구조	건축물 동수 1동
	최고높이	165m	용적률	797.76%	연면적 합계 128,153.518㎡
심의내용	구 분	주요 심의결과			
	(구조)분야	○ 사전검토의견을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함 ○ 사전검토의견에 대한 조치사항을 확인하였으며 추가의견 없음. (김순환 위원) ○ 사전검토의견에 대해 조치됨을 확인함.(최혜진 위원)			
	(토질)분야	○ 사전검토의견을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함. ○ 지하수 유출량은 디지털유량계를 사용하여 실시간으로 관리하되 4개소에서 각각의 유출량을 관리함과 함께 총유출량을 산출하여 관리기준치를 상회하거나 급격한 변화로 나타나는 경우 지하수법을 적용하여 관할지자체에 신고하고 안정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설계서에 반영 요망.			
심의결과	[] 원안 의결 [○] 조건부 의결 [] 재검토 의결 [] 부결				
	※ 작성기준(건축위원회 심의기준 9.3 관련) • 원안 의결 : 상정안건에 대하여 수정없이 원안대로 의결 • 조건부 의결 : 상정안건에 별도의 내용을 부가하거나 제외하는 등의 일부 조건을 부여하여 건축사가 반영하도록 하는 의결 • 재검토 의결 : 상정안건을 다시 검토 보완하여 추후 위원회에서 다시 심의토록 의결 • 부결 : 상정안건이 건축법령 등에 위반되거나 심의요건이 불충분하여 부결시키기로 의결 (단, 「건축위원회 심의기준」 2.3 가목에서 라목까지 사유에 해당하여야 함)				

본 건축위원회 심의는 건축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구조안전에 관한 전문가의 구조안전심의로서, 사전검토의견 및 심의내용에 대한 이행여부는 인· 허가권자가 확인하여 처리하여야 함

2022년 제1회 건축소위원회(건축구조) 심의 주요결과

[2호 안건: 서구 청라동 1-794번지 외 9필지(관광휴게시설(관망탑), 판매시설, 문화 및 집회시설)]

운영기관	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		심의일자	2022.1.21.	
건축종별	[○] 신축, [] 증축, [] 대수선, [] 기타				
건축주	성명(법인명) 청라시티타워주식회사				
대지현황	대지위치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동				
	지 번	1-794	관련지번 외 9필지		
	대지면적	33,058㎡	용도지역(지구, 구역) 일반상업지역, 특별계획구역, 재·중지구단위계획구역		
건축물현황	건축면적	15,369.74㎡	건폐율	46.49%	층수 지하 : -2층 / 지상 : 30층
	주 용 도	관광휴게시설(관망탑) 판매시설, 문화 및 집회시설	구 조	철근콘크리트구조 철골철근콘크리트구조 철골구조	건축물 동수 1동
	최고높이	448m	용적률	139.28%	연면적 합계 97,250.63㎡
심의내용	구 분	주요 심의결과			
	(구조)분야	○ 사전검토의견을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함 ○ 사전검토의견에 대한 조치사항을 확인하였으며 추가의견 없음.(김순환 위원) ○ 사전검토의견에 대한 조치계획을 이행하기 바람.(양성환 위원) ○ 사전검토의견에 대해 조치됨을 확인함.(최혜진 위원)			
	(토질)분야	○ 사전검토의견을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함 ○ 계측수행 시 빈도는 관리기준 값에 근접하거나 급격하게 변화 시 계측빈도를 증가하여 안전관리에 대비하고 지하층에서 공사하는 인부 등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경고시스템과의 연동체계를 구축하여 운용하는 방안을 설계서에 상세 수록 요망.			
심의결과	[] 원안 의결 [○] 조건부 의결 [] 재검토 의결 [] 부결 ※ 작성기준(건축위원회 심의기준 9.3 관련) • 원안 의결 : 상정안건에 대하여 수정없이 원안대로 의결 • 조건부 의결 : 상정안건에 별도의 내용을 부가하거나 제외하는 등의 일부 조건을 부여하여 건축사가 반영하도록 하는 의결 • 재검토 의결 : 상정안건을 다시 검토 보완하여 추후 위원회에서 다시 심의토록 의결 • 부결 : 상정안건이 건축법령 등에 위반되거나 심의요건이 불충분하여 부결시키기로 의결 (단, 「건축위원회 심의기준」 2.3 가목에서 라목까지 사유에 해당하여야 함)				

본 건축위원회 심의는 건축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구조안전에 관한 전문가의 구조안전심의로서, 사전검토의견 및 심의내용에 대한 이행여부는 인·허가권자가 확인하여 처리하여야 함

2022년 제1회 건축소위원회(건축구조) 심의 주요결과

[3호 안건: 연수구 187번지(교육연구시설(대학교))]

운영기관	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		심의일자	2022.1.21.	
건축종별	[○] 신축, [] 증축, [] 대수선, [] 기타				
건축주	성명(법인명) 인천광역시				
대지현황	대지위치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				
	지 번	187	관련지번		
	대지면적	94,234.30㎡	용도지역(지구, 구역) 제3종일반주거지역,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		
건축물현황	건축면적	550.08㎡	건폐율	0.19%	층수 지하 : -1층 / 지상 : 16층
	주 용 도	교육연구시설(대학교)	구 조	철근콘크리트구조	건축물 동수 1동
	최고높이	56.65m	용적률	2.17%	연면적 합계 7,029.45㎡
심의내용	구 분	주요 심의결과			
	(구조)분야	○ 사전검토의견을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함 ○ 사전검토의견에 대한 조치사항을 확인하였으며 추가의견 없음. (김순환 위원) ○ 사전검토의견에 대해 조치됨을 확인함.(최혜진 위원)			
	(토질)분야	○ 사전검토의견을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함 ○ 굴착사면의 경우 우기 시 사면유실 및 유입수 차단을 위한 수방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계획수립 요망.			
심의결과	[] 원안 의결 [○] 조건부 의결 [] 재검토 의결 [] 부결 ※ 작성기준(건축위원회 심의기준 9.3 관련) • 원안 의결 : 상정안건에 대하여 수정없이 원안대로 의결 • 조건부 의결 : 상정안건에 별도의 내용을 부가하거나 제외하는 등의 일부 조건을 부여하여 건축사가 반영하도록 하는 의결 • 재검토 의결 : 상정안건을 다시 검토 보완하여 추후 위원회에서 다시 심의토록 의결 • 부결 : 상정안건이 건축법령 등에 위반되거나 심의요건이 불충분하여 부결시킴으로 의결 (단, 「건축위원회 심의기준」 2.3 가목에서 라목까지 사유에 해당하여야 함)				

본 건축위원회 심의는 건축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구조안전에 관한 전문가의 구조안전심의로서, 사전검토의견 및 심의내용에 대한 이행여부는 인·허가권자가 확인하여 처리하여야 함

2022년 제1회 건축소위원회(건축구조) 심의 주요결과

[4호 안건: 중구 운남동 1681-2번지(공동주택(아파트) 및 부대시설)]

운영기관	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		심의일자	2022.1.21.	
건축종별	[○] 신축, [] 증축, [] 대수선, [] 기타				
건축주	성명(법인명) (주)호반건설				
대지현황	대지위치 인천광역시 중구 운남동				
	지 번	1681-2	관련지번		
	대지면적	35,611.30㎡	용도지역(지구, 구역) 제2종일반주거지역,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		
건축물현황	건축면적	5,767.98㎡	건폐율	16.19%	층수 지하 : -2층 / 지상 : 21층
	주 용 도	공동주택(아파트) 및 부대시설	구 조	철근콘크리트구조	건축물 동수 8동
	최고높이	62.53m	용적률	181.44%	연면적 합계 97,621.26㎡
심의내용	구 분	주요 심의결과			
	(구조)분야	○ 사전검토의견을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함 ○ 사전검토의견에 대한 조치사항을 확인하였으며 추가의견 없음.(김순환 위원) ○ 사전검토 의견에 대한 조치계획을 이행하기 바람.(양성환 위원) ○ 사전검토의견에 대해 조치됨을 확인함.(최혜진 위원)			
	(토질)분야	○ 사전검토의견을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함 ○ 지하수 관리를 위한 차수그라우팅은 현장의 지질특성을 고려하여 사용 전 시험테스트를 시행하여 차수효과 및 염수에 의한 용탈현상 등을 검토하여 시행하도록 계획 수립 요망.			
심의결과	[] 원안 의결 [○] 조건부 의결 [] 재검토 의결 [] 부결				
	※ 작성기준(건축위원회 심의기준 9.3 관련) • 원안 의결 : 상정안건에 대하여 수정없이 원안대로 의결 • 조건부 의결 : 상정안건에 별도의 내용을 부가하거나 제외하는 등의 일부 조건을 부여하여 건축사가 반영하도록 하는 의결 • 재검토 의결 : 상정안건을 다시 검토 보완하여 추후 위원회에서 다시 심의토록 의결 • 부결 : 상정안건이 건축법령 등에 위반되거나 심의요건이 불충분하여 부결시키기로 의결 (단, 「건축위원회 심의기준」 2.3 가목에서 라목까지 사유에 해당하여야 함)				

본 건축위원회 심의는 건축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구조안전에 관한 전문가의 구조안전심의로서, 사전검토의견 및 심의내용에 대한 이행여부는 인·허가권자가 확인하여 처리하여야 함